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1진정0373200 기숙사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기숙사 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 기숙사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일요일 오전 일부 시간대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노트북, 태블릿pc, 패드 등 전자기기에 대해서도 와이파이존 외의 장소에서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달간 압수한다. 이러한 제한

으로 인해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한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매주 일요일 07:30~13:50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외 시간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제출 후 기숙사 사감이 수거, 보관하여 관리하나 학생이 요구할 시에는 담임교사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내에는 공중전화가 8대 설치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에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님이 언제든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주간에는 교무실 담임 전화, 야간에는 사감, 부사감 전화로 상시 연락망을 갖추고 있다. 이 규정은 입학 시에 이미 공지를 하였고 학부모님들의 동의와 학생들의 기숙사 입사 전 제반 규정에 대한 규칙 준수 서약서를 받은 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휴대폰 사용 규정은 지난해부터 기숙사 학생회 대표들의 회의에 의한 건의를 수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패드, 태블릿, 노트북 등 전자기기 제한 규정도 마찬가지다. 기숙사 생활 규정에 제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적용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자습실과 와이파이존을 분리하여 운영하는데, 학생이 자습실 내 개인의 칸막이 지정석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학업과 무관한 프로그램을 악용할 소지가 많고, 타이핑 소리로 인해 가까운 주변의 학생들에게 소음을 유발하여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엄격히 규정을 적용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 또는 기기 압수를 하여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고 있다. 다만, 와이파이존에서는 인터넷 강의나 과제해결을 위해 패드나 태블릿,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야간자습시간을 끝낸 학생들이 잠자기 위해 기숙사로 이동하여 소등 후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기숙사 내 개인용 전자 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또한 사전에 공지하여 기숙사 제반 규정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력 저하, 수면 부족, 스마트기기 중독 등으로 인한 각종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 따르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학교 현황, 피진정학교 기숙사 생활규정, 전화조사내역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됨.

가. 피진정학교는 전국단위의 기숙형 사립학교로 전교생은 160여 명, 기숙사 학생은 전교생의 70% 정도이다. 기숙사 학생은 공휴일(일요일 포함) 07:30~13:50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시간에는 소지 및 사용할 수 없다. 전자기기(노트북, 태블릿pc, 패드)의 경우에는 매일 19:00~24:40 와이파이존에서 인터넷 강의, 과제 등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시간 및 장소에는 반입 및 사용할 수 없다.

나. 피진정학교는 기숙사 생활규정 제12조 제6호에 따라 기숙사 학생의 전자기기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별점 부과 및 1달간 기기 압수, 별점 20점을 초과하는 경우 청소 40시간 부과, 학생이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학기 내 3회 이상 별점으로 인한 청소를 한 경우 기숙사 퇴거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조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학교 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써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진정학교의 경우 기숙형 학교로서, 기숙사 학생들은 학교 일과

시간 이후 기숙사에서 거주하므로 장기간 집과 떨어져 생활하는 점에서 가족 등 외부와의 통신 필요성이 크지만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공휴일 07:30~13:50에 불과하다. 피진정인은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기숙사 생활규정을 근거로 공휴일 07:30~13:50을 제외한 시간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피진정인은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기숙사 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지 이로써 해당 규정이 내용적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정해진 시간 외에도 학생이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하면 담임교사가 언제든지 허용하고 있고, 필요한 연락은 공중전화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담임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짧은 휴식시간 중 공중전화를 사용할 경우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소지·사용의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 제한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가 학생들의 시력 저하, 수면 부족, 스마트기기 중독

우려 등이라고 주장하나, 현대 사회에서 전자기기는 교과과정에서의 인터넷 강의, 수행과제 해결과 같은 학습의 수단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개인의 관심사, 취미, 스포츠, 연예 등 사회의 각종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통해 개인 적성을 개발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의 역할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학교에서는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사용 가능 시간과 장소를 한정하고 그 외의 시간, 장소에는 일체 소지를 금지하면서 위반 시 1달간 전자기기를 압수하는데, 이러한 제한은 그 정도가 지나침은 물론이거니와 아울러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이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소지·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학교 일과시간은 물론이고 이후 기숙사 생활에서까지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의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함박관 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2. 22.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이 준 일

위 원 윤 석 희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①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